

「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4. 12 31(수) 평창군수(기획감사실장)

나. 회부일자 : 2015. 01. 13(화)

다. 상정일자 : 2015. 01. 19(월) 제208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기획감사실장 장하진)

- 고문변호사의 자격을 개업 중인 변호사로 굳이 제한을 둠으로써 헌법재판관, 대법관 등의 고위법관, 검사 등으로 은퇴하고 개업하지 않은 변호사들이 오히려 관련 분야에 더 큰 전문성과 식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에도 동 조례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으며,
- 고문변호사에 대한 진입제한으로 경쟁력 있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피해는 지역주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홍금숙)

-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규정되어 있는 고문변호사의 위촉범위를 “개업중인 변호사”에서 “변호사”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그간 조례에 의하여 “개업중인 변호사”로만 제한 되었던 고문 변호사의 위촉범위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모두 대상으로 함으로써,
- 고문변호사 위촉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질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”를 “변호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